제303회 ●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제10차 보건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 2878)

2021. 12. 17.

보건복지위원회수석전문위원

[박기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878

I. 조례안 개요

1.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박기재 의원 외 11명

나. 제출일자 : 2021년 10월 15일

다. 회부일자 : 2021년 10월 20일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 상위법인 「동물보호법」 개정사항에 따른 수정사항 등을 반영해 조 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해 조례 일부를 정비함.

나. 현재 사업내용을 반영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유기동물의 입양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함. (안 제1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동물보호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첨부)

Ⅲ.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이문성)

1 개정안의 취지

해당 개정안은 상위법인 「동물보호법」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일치시킬 수 있도록 하며, 현재 집행부에서 시행중인 사업 가운데 일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횟수 제한 항목을 삭제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체적인 조례의 정비를 목적으로 발의되었음.

2 개정안의 주요내용 검토

가. 상위법령과의 인용 불일치 항목 개정

해당 개정안에서 상위법령과의 인용을 일치시키기 위해 개정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음.

상위법 (동물보호법)조항	상위법 문구	현재 조례조항	현재 조례문구
제4조제2호 가목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이하 "유실·유기동물"이라 한다)	제2조1의2	"유실·유기동물(이하 "유기동물"이라 한다)"이란 제1호에 따른 동물 중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종이상자 등에 담겨져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제2조제3의2	"맹견"이란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를 말한다.	제2조2의2	"맹견"이란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를 말한다.
시행규칙 제8조의제2항	② 제1항에 따라 동물등록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별표 2의 동물등록번호의 부여방법 등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에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이하 "무선식별장치"라 한다)를 장착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동물등록증(전자적 방식을 포함한다)을 발급하고,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이하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등록사항을 기록・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등록대행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에게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이하 "무선식별장치"라 한다) 또는 인식표를 장착 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하며, 등록대상동물이 등록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나. 유기동물 입양사업

 개정안에서는 현재 집행부에서 시행 중인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사업과 관련해 입양 시 지원 횟수 및 내용 확대의 내용을 담고 자 하였음.

〈표〉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유기동물의 입양) ① 시장	제15조(유기동물의 입양) ①
은 시민이 유기동물을 입양하고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	
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u>단,</u>	
유기동물의 입양 1회에 한하여 지	<u><단서 삭제></u>
<u>원할 수 있다.</u>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1년분에 해당하는 동물보험료	3. 동물보험료 또는 동물의료비
의 일부 또는 전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해당 사업은 국비 매칭사업으로, 「지방재정법」 및 「서울특별 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 지원금액이 정해져있음.
 - 해당 사업은 유실·유기동물 입양 후 6개월 이내 소요되는 소유자(입양자) 부담비용에 대하여 지출증빙 서류 확인 후 해당부분만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범위는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 중성화 수술비 등으로 지정되어 있음.

- 현재 입양 1마리당 최대 25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 (국비 7만 5천원, 시·구비 7만 5천원, 자부담 10만원) 횟수를 제한한 해당 항목을 삭제하더라도 기존 재정수입의 순감소나 순증가 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다. 조문을 명확히 하기 위한 문구 수정

또한, 조문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문구를 수정하였음.

⟨표⟩ 신・구조문 대비표

혅 개 했 정 아 제17조(피학대동물 보호 및 관리) 제17조(피학대동물 보호 및 관리)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구조한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구조한 동물을 동물보호센터에 보호조치 동물을 동물보호센터에 보호조치 를 하되,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단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시행령 제5 체가 보호조치를 희망하는 경우에 조에 따른 단체가 보호조치를 희 는 그 단체에서 보호조치를 하도 망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에서 보 록 하고, 소유권이 자치구로 귀속 호조치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소유 된 동물을 법 제21조에 따라 처리 권이 자치구로 귀속된 동물을 법 제21조에 따라 처리하려는 경우 하려는 경우 보호조치 중인 단체 에 우선적으로 분양할 수 있다. 보호조치 중인 단체에 우선적으로

③ (생략)

제24조(동물보호업무의 지원) ① 시 장은 유기동물의 <u>구조·보호·분</u> 양 및 동물 복지와 동물등록 등이 ③ (현행과 같음)

분양할 수 있다.

제24조(동물보호업무의 지원) ① ------- <u>구조·보호와 입</u> 양, 동물학대 방지, 동물등록, 반

현 행	개 정 안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자치구	려동물의 교육·홍보 등 동물보호·
또는 소속 기관과 동물보호센터,	복지 시책
동물복지지원센터 및 <u>영업자</u> 등에	<u>영업자,</u>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단체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현재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5조에서는 동물보호 민간단체의 범위를 1.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규정하고 있음.
- 해당 개정사항은 상위법 시행령에 규정된 동물보호 민간단체의 범위를 조례로 명확히 규정하고자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됨.

라. 그 외 개정사항

- 그 외에도 조례의 중복사항을 삭제하고, 구청장의 의무를 추가하고, 반려견 놀이터와 관련해 타 관련법인 「공원녹지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본 조례에서 삭제하고자 하였음.
 - 현재 반려동물 놀이터와 관련해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2항11호에 동물놀이터는 10만제곱미터이상의 근린공원 및 문화공원, 체육공원 및 법제15조제1항제3호아목1)에 따른 공원에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1) 15}조(도시공원의 세분 및 규모) ① 도시공원은 그 기능 및 주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3.} 주제공원: 생활권공원 외에 다양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공원

아. 그 밖에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공원

현 행	개 정 안
제24조(동물보호업무의 지원) ② 시	<u><</u> 삭 제>
장 또는 구청장은 유기동물의 구	
조•보호•분양 및 동물복지 업무	
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유기	
동물의 구조・보호・분양 및 동물	
복지와 관련된 교육・홍보・지원	
•위원회 등의 활동에 대하여 예	
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	
원할 수 있다.	
<u>③</u> <u>시장</u> 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	<u>② 시장 또는 구청장</u>
비법」 제8조에 따른 정비구역내	
동물의 구조와 보호를 위한 노력	
을 하여야 하며, 원활한 수행을 위	
해 법 제4조제4항에 해당하는 민	-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단체 -
<u>간단체</u>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	
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u></u>
제26조(반려견 놀이터 설치・운영	제26조(반려견 놀이터 설치・운영
등) ① <u>시장</u> 은 반려견으로 인한	등) ① <u>시장 또는 구청장</u>
사회적 갈등을 완화시키고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u>.</u>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반려견	<u><삭 제></u>
놀이터를 「도시공원 및 녹지 등	

현 행	개 정 안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제	
2항제11호에 따라 10만제곱미터	
이상의 근린공원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제3호아목에 따른 공원에 설	
치할 수 있다.	
<u>④</u> (생 략)	<u>③</u> (현행 제4항과 같음)

3 종합의견

- 지방자치가 더욱 발전하고 그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자치법규가 국가 법령 체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늘어나고 있고, 주민 의 생활 속에서 자치법규가 차지하는 중요성이 증가하는 현실에 비추어 조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를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것은 중요한 입법적 과제라 할 수 있음.²⁾
- 본 개정안은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내용을 포함 하고, 상위법인「동물보호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의 개정사항 을 반영하고 조문을 명확히 하는 등 전반적인 조문을 정비하고 자 한다는 점에서 그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겠음.

문 의 처 도미화 입법조사관 (02-2180-8147)

²⁾ 이세정(2015). 조례의 법령·헌법 합치성 제고 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